# 이사회 운영규정

주 식 회 사 광주신세계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 2 장 구 성

##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독립이사를 포함한다.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단,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3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단, 필요시에 대표이사가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 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정관에 의거 1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적이사의 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4 장 부의사항

## 제 11 조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362조)
(2) 주주총회 의장의 결정 (상법 제366조의2)
(3)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447조의2)
(4) 자본의 감소 (상법 제438조)
(5)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7조)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상법 제517조, 522조, 530조의2, 519조)
(7) 〈삭 제〉
(8)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상법 제374조)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382조, 385조)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상법 제417조)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상법 제400조)
(13) 주식배당 결정 (상법 제462조의2)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15)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 제415조)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 폐지 (상법 제393조 제1항)
(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 3, 상법 제530조의11)
(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5)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상법 제416조)
   (2)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상법 제462조의3)
   (3)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상법 제469조)
   (4)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법 제461조 제1항)
   (5)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513조)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516조)
   (7)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긴급재난구호 관련 기부금은 선집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희망배달캠페인 운영 기금은 연간 계획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 이사회, 위원회등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 (상법 제389조)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상법 제397조)
   (3)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상법 제398조)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상법 제393조)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393조)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상법 제393조)
   (7) 기타 이사 및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5. 기타 사항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공시규정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2) 그 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은 별첨 참조

## 제 5 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13 조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14 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관련법규에 의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15 조 (특별위원회)**

① 이사회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 위험으로 주주의 직접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4인 이하의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필요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해산한다. 이사회는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

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는 (i) 특별위원회의 검토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 또는 (ii)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④ 그 외 특별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6 조 (기타)**

이사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필요에 따라 상기 나열한 위원회 이외에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6 장 기타사항

**제 17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8 조 (시행일)**

상기 이사회 규정은 2001년 7월 이사회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